

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(순경) 채용시험 공고

- 합 정 요 원 -

2019년 2월 28일

2019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(순경)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해 양 경 찰 청 장

1. 관련근거

- 가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, 제8조(신규채용)
 나.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제6조(채용시험의 합격결정)

2. 채용분야 및 인원

구분	계명	합 정 요 원									
		중부		서해		남해		동해		제주	
		항해	기관	항해	기관	항해	기관	항해	기관	항해	기관
계명	130	25	17	14	9	7	5	15	10	17	11
남	104	20	14	11	7	5	5	12	8	13	9
여	26	5	3	3	2	2	0	3	2	4	2

3. 자격요건

가. 응시자격 및 연령

분 야	자 격 요 건		응시 연령
합정요원 (순경)	해양경찰 의무경찰	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만기 전역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(6.11)까지 만기 전역 예정자	20세이상 30세이하 (’88.1.1 ~ ’99.12.31)
	해 기사	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,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	18세이상 40세이하 (’78.1.1 ~ ’01.12.31)
	해 군 전역자	항해분야는 군(軍)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(항해) 근무 경력이 3년, 기관분야는 군(軍)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(기관)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퇴직자의 경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	

※ 응시 상한연령 연장 :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,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, 2년 이상은 3세

나.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(최종시험예정일<6.11>까지 전역예정자)

다. 최종시험예정일(6.11) 기준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,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별첨)

라. 경력계산,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(6.11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**합정요원(해군전역자)** : 퇴직자의 경우 경력계산 시 최종시험예정일(6.11)을 **기준으로**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**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

마. 신체 기준표

구 분	내 용 및 기 준
체 격	국·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
시 력	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 이어야 한다.
색 신 (色 神)	정상 또는 색약(약도)이어야 한다. 다만, 항공·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. *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(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)
청 력	청력이 정상[좌우 각각 40데시벨(dB)이하]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]이어야 한다.
혈 압	고혈압·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. (확장기 90 ~ 60mmHg, 수축기 145 ~ 90mmHg)
문 신	시술동기,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,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

4.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

가. 시험공고 : 2019. 2. 28(목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

나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

- 접수기간 : 2019. 3. 1(금) 10:00 ~ 3. 11(월) 18:00 [11일간]
 ※ 응시표는 3. 13(수) 10:00 이후부터 출력가능
- 접수방법 : <http://gosi.kcg.go.kr>에 접속, 안내에 따라 접수
 ※ 응시수수료 5,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.
- 접수취소 : 2019. 3. 12(화) 18:00까지 가능하며,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.
- 응시원서 사진 :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(3cmX4cm) 업로드
 ※ 배경 있는 사진,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
-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.

5. 시험일정 및 장소

구 분	시험일정	장 소	합격발표
필기시험	4.13(토)	전국 5개 지역 (세부장소 별도공지)	4.23(화) 해양경찰청 홈페이지
적성검사	5.8(수) ~ 15(수) (세부일정 별도공지)		-
신체·체력검사			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
서류전형	5.28(화) ~ 30(목)	해양경찰청	불합격자만 개별통지
면접시험	6.11(화) ~ 13(목)	추후공지	-
최종합격자발표	6.18(화)	해양경찰청 홈페이지	

※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적성·체력검사,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「채용공고」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공지 예정입니다.

6.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

가. 필기시험 (객관식, 4지선다형)

- 시험과목(4과목, 80분)

분 야	과목(수)	과 목(과목별 20문항, 4지선다형)
합정요원	필수(3)	○ 해사영어, 해사법규, 해양경찰학개론
	선택(1)	○ 항해분야(항해술), 기관분야(기관술) 중 택 1

- 합격자 결정 : 매과목 40%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(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) 선발

나. 종합적성검사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.

※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.

다. 신체·체력검사

- 신체검사
 -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‘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’ 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‘신체 조건표(별첨)’ 와 ‘신체검사 세부기준(별첨)’ 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 ※ 국·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다음 페이지 ↓

2) 체력검사

- 종목 : ① 100미터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50미터 수영
- 매 종목 실격 없이 **총점(30점)의 40% 이상(12점) 득점자**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①~③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.
- ④ 종목의 경우에는 기준(남자 130초, 여자 150초 이내) 미달시 불합격으로 합니다.
- 기타 평가기준은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별표6 (별첨)에 따릅니다.

※ 도핑테스트 실시 : 응시생의 7%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(별첨)

라. 서류전형 :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.

마. 면접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발전가능성,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(10점), 면접평가(10점), 가산점(5점)을 합산하여 **총점(25점)의 40% (10점)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**합니다.

※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

7. 시험 가산점

가. 취업지원대상자

1)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합니다.

※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2)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3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※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(☎1577-0606)

나.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

1)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」 별표4(별첨)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)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,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.

3) 어학능력 자격증은 **최종시험예정일(6.11)을 기준으로 2년 이내** 것만 인정됩니다.

4)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**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** 바랍니다.

8. 최종합격자 결정 : 필기시험(50%), 체력검사(25%), 면접시험(25%)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9. 교육 및 임용

가. 교 육 : 2019년 6월 말 해양경찰교육원 입교

※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 합격자 발표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나. 임 용 : 최종합격자는 신입교육 수료 후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성적 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

※ **합정요원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 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.**

10. 제출서류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나. 원서접수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**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.**

11. 유의사항

가.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나. 합격자 발표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신원조사 등 경찰공무원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**(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)**

다.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연령, 가산점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의해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※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-1호 참조

라.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**응시표와 신분증 원본**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여권,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, 수상구조사 자격증)을 소지하여야 하며 **응시표,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 아울러, 위에 열거한 신분증 외 **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**

마. **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**

바. 공공기관(공무원 등)이나 軍(사병제외)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「경력사항」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.

사.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『채용공고』 또는 원서접수 사이트(<http://gosi.kcg.go.kr>)에 게재 예정이며, 응시자는 시험시간, 장소,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**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
아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.

※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입니다.

자. 색약(약도)자의 경우 경찰병원, 종합병원 또는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(색각경)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 결과 및 의사조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차.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정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카. **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**

타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 인계선발팀(☎032-835-243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